

수원지방법원 2022. 12. 22 선고 2019가단5614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천

담당변호사 김명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

담당변호사 김영곤

변 론 종 결 2022. 12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2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11. 6.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96,25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6,250,00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,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F은 2014. 7. 24.경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해 왔는데, 2015. 7. 6.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금채무를 5,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’이라 한다) 원고와 함께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015년 제706호로 ‘원고가 2015. 7. 6. F에게 5,000만 원을 변제기 2016. 7. 5., 이자 25%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F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’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(이하 ‘이 사건 공정증서’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나. F의 모 H는 F을 대위하여 2016. 11. 4. 2,700만 원, 2016. 12. 27. 1,750만 원, 2017. 2. 1. 2,650만 원, 2018. 1. 31. 5,500만 원 등 합계 1억 2,600만 원(이하 ‘이 사건 변제금’이라 한다)을 F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.

다. 피고와 F은 2011. 3. 15.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9. 7. 17.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. 8. 13. 임대인 I, 임차인 J(피고의 언니), 임대차보증금 3억 7,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,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인 2018. 11. 6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C, 임차인 피고 및 H, 임대차보증금 3억 8,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)이 체결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- 1) 원고는 채무자인 F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.
- 2) 그런데 F은 J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등 가족과 함께 이

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는데, 2018. 11. 6. 임차인을 피고와 H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

3)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피고 명의로 된 1억 9,250만 원은 부부인 F와 피고의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그 중 F의 지분에 해당하는 9,625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F의 유일한 재산인데, 피고와 F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.

4) 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분할협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9,62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,625만 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, 임대인인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

1) 원고는 채무자인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,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H의 대위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, 먼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2)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2014. 7. 24.경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해 오다가, 2015. 7. 6.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금채무를 5,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,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모 H가 F을 대위하여 2016. 11. 4.부터 2018. 1. 31. 합계 1억 2,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변제금을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, 이와 같은 H의 대위변제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, 피고와 F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의 존부 및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연운희